수업운영 내규

개정 2022. 08. 11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수업운영(학부, 대학원, 연구과 과정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 개설) [삭제 2020. 6. 12]

제3조(수업 방법)

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(현장)실습수업, 집중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수업 방법은 필요한 경우 혼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실습수업) 실습수업의 종류와 대상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성주간 전례실습(전교생)
2. 국내·외 선교실습(학부 4학년 및 부제반)
3. 전교생이 참여하는 전례실습(위령의날 미사, 개강미사, 종강미사)

제5조(집중수업)

① 집중수업은 학기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말한다.

② 집중수업의 개설은 국내외 석학 초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며,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학부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수업계획서)

① 수업을 담당하는 모든 교수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, 그 1부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업계획서에는 15주간 이상의 주차별 수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. 단, 집중수업은 예외로 한다.

③ 실습수업은 수업계획서의 주차별 계획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강의식 수업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한다.

제7조(출결관리)

① 교원은 수강하는 학생의 출결, 지각 여부와 수업일수,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출석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8.11.>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석부를 매학기말 채점표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사후 정정할 수 없다. <개정 2022.8.11.>

③ 교원은 학칙 제38조 및 학사시행세칙 제25~26조에 따라 학생의 수험자격을 확인한 후 학기말 고사 실시 이전에 교학처에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8.11.>

④ 교학처는 수험자격을 상실한 학생에게 수업평가 및 학기말 고사에 응할 수 없음을 고지한

다. <개정 2022.8.11.>

⑤ <삭제 2022.8.11.>

제8조(보강)

① 담당 교수의 사적인 휴강 외에도 법정공휴일, 개교기념일, 학교행사(단, 제4조의 실습수업은 제외) 등으로 인한 공적인 휴강의 경우에도 해당 학기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강을 통해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.

② 담당 교수는 보강을 할 경우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외 수업) 교외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교외 수업 예정일 2주일 이전에 <수업협조요청서>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최소 수강인원) 강의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인원은 3명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22.8.11.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4조)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7조)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내규(제2조)는 2020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(제7조, 제10조)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